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2. 12. 20 선고 2021가단211947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국제

담당변호사 윤규원, 김민규

피 고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하늘

담당변호사 김재환, 신영경

변 론 종 결 2022. 11. 15.

판 결 선 고 2022. 12. 20.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피고와 소외 C 사이에 2019. 12. 24. 체결된 180,000,000원의 증여계약을 59,966,103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59,966,103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값은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7. 1.경 D로부터 부산 수영구 E빌딩 6층 상가를 임차하여 그 곳에서 'F'라는 상호로 마사지샵(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을 운영하였다.

나. 원고는 2018. 7. 25. C와 사이에, 원고가 C에게 이 사건 점포의 영업권을 양도하고 C로부터 권리금 120,000,000원을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권리금계약(이하 '이 사건 권리금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같은 날 그 중 계약금 60,000,000원을 지급받은 것으로 하고, 나머지 잔금 60,000,000원을 2018. 12. 30. 지급받기로 하였다.

다. 원고와 C는 이 사건 권리금계약에 따른 잔금 60,000,000원의 지급에 관하여 공정증서를 작성하기로 하고 이를 촉탁하여 2018. 7. 30. 법무법인 G 작성 2018년 증서 제851호로 '원고는 같은 날 C에게 60,000,000원을 변제기 2018. 12. 30., 지연손해금 연 24%로 정하여 대여하였고, C는 위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즉시 강제집행을 당하여도 이의가 없음을 인낙하였다'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가 작성되었다.

라. 원고는 2019. 5. 23.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하여 이 법원 2019타채3626호로 C의 H에 대한 부산 수영구 I아파트 J호에 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채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은 2019. 6. 3. 이를 인용하였으나, 원고는 2019. 12. 17. 위 신청을 취하하고 그 압류를 해제하였다. C는 위 압류 해제 이후 H로부터 위 임대차보증금 중 20,000,000원을 수표로 지급받고 나머지 임대차보증금도 자신의 K은행 계좌로 2019. 12. 20. 200,000,000원, 2019. 12. 14. 50,000,000원, 2019. 12. 31. 80,000,000원을 각 지급받음으로써 임대차보증금 전액을 반환받았다.

마. 한편 C의 동생인 피고는 2019. 11. 22. L과 사이에 부산 수영구 M건물 N호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200,000,000원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C는 2019. 12. 24. 자신의 K은행 계좌에서 182,500,000원을 인출하여 그 중 180,000,000원을 피고에게 지급하였고, 피고는 그 돈으로 위 임대차계약의 잔금 18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12 내지 16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원고는 C에 대하여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한 채권을 가지고 있는데, C는 2019. 12. 24.경 자신의 동생인 피고에게 180,000,000원을 증여(이하 '이 사건 증여'라 한다)함으로써 채무초과 상태를 초래하였는바, 위 증여는 원고를 비롯한 일반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이다. 따라서 위 증여계약은 원고의 잔존 채권액인 59,966,103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하고, 그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59,966,103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1) 원고는 2020. 5. 27. C를 강제집행면탈죄로 형사고소하고, 같은 해 6. 2. C의 어머니 O을 상대로 사해행위 취소의 소를 제기하였는바 원고는 적어도 위 형사고소 이전에 사해행위취소의 원인에 대하여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원고는 그로부터 1년이 경과한 후인 2021. 6. 4. 이 사건 사해행위 취소의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사건 청구는 제척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

(2) C는 무자력자가 아니고, 사해의 의사도 없었다.

3. 피고의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채권자취소권 행사에 있어서 제척기간의 기산점인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이라 함은 채권자가 채권자취소권의 요건을 안 날, 즉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사해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날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므로, 단순히 채무자가 재산의 처분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법률행위가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라는 것 즉, 그에 의하여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거나 이미 부족상태에 있는 공동담보가 한층 더 부족하게 되어 채권을 완전하게 만족시킬 수 없게 되었으며 나아가 채무자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알 것을 요한다.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을 제1, 3,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2020. 5. 27. C를 강제집행면탈죄로 형사고소할 무렵 원고는 C가 기존 거주지에 대한 임대차계약 종료 후 그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아 신규 거주지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가족 중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은 알았던 것으로 보이나, 한편 앞서 본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더라도 원고는 피고가 임차인으로서 신규 거주지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이나 그 임대차보증금의 액수, C가 피고에게 지급한 돈의 액수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C의 구체적인 재산 상황에 대하여도 알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원고가 C의 구체적인 사해행위의 내용, C의 사해행위로 인하여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거나 이미 부족상태에 있는 공동담보가 한층 더 부족하게 되어 채권을 완전하게 만족시킬 수 없게 되었으며 나아가 채무자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알았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 없다.

4. 본안에 대한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C에 대하여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한 채권을 가지고 있고, 위 채권은 원고가 주장하는 사해행위인 이 사건 증여 이전에 이미 발생하여 있었으므로, 이 사건 증여에 관한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 청구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나. 사해행위의 성립 여부(C의 무자력 여부)

(1) 민법 제406조의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인 '사해행위'란 채무자가 적극재산을 감소시키거나 소극재산을 증가시킴으로써 채무초과상태에 이르거나 이미 채무초과상태에 있는 것을

심화시킴으로써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를 말한다. 그리고 사해행위취소의 소에서 채무자가 그와 같이 채무초과상태에 있는지는 사해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0. 26. 선고 2015다254675 판결 참조). 채무자의 법률행위 등이 사해행위임을 주장하고 그 취소를 구하는 채권자는 그 피보전채권과 채무자의 법률행위 등의 존재사실은 물론, 채무자가 법률행위 등으로 인하여 무자력이 초래되었다는 사실, 채무자의 사해의 의사 등 사해행위 성립의 요건사실을 구체적으로 주장 및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5다28686 판결 참조).

(2)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C가 이 사건 증여 당시 이로 인하여 채무초과상태에 이르거나 이미 채무초과상태에 있는 것을 심화시켰는지 보건대, 앞서 든 증거들, 갑 제17 내지 19호증, 을 제8, 23, 24, 27, 28, 30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주식회사 P, Q은행, K은행, R기관에 대한 각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증여 당시 C는 적어도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합계 586,457,530원 상당의 적극재산을 보유하고 있었던 사실, ② C가 위 적극재산에서 180,000,000원을 피고에게 증여하더라도 C에게 406,457,530원(=586,457,530원-180,000,000원)의 적극재산이 남는데, 이는 원고가 주장하는 C의 소극재산을 다 합친 금액 380,607,735원을 초과하는 점, ③ 더구나 C는 이 사건 증여 당시 이 사건 점포를 운영하고 있었던바 아래 적극재산 외에도 이 사건 점포 내 영업 시설과 비품 및 영업권 등 유무형의 재산적 가치를 보유하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함에도 원고는 C가 보유하고 있는 이 사건 점포의 시설 등의 가액에 대하여 아무런 증명을 하지 않고 있는데(이 사건 증여가 있기 약 1년 5개월 전 원고는 이 사건 점포의 영업권을 120,000,000원으로 평가하여 피고에게 양도하였던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이 사건 점포의 영업권의 가치가 없다고 단정할 수 없다), 이 사건 점포의 시설이나 집기, 영업권 등을 평가하여 C의 적극재산에 포함시킨다면 C의 적극재산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이는 점, 채권자취소의 소에 있어서 채무자의 무자력 여부는 주요사실에 해당하지만 그 판단의 기준인 적극재산 및 소극재산의 가액은 간접사실에 해당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증여로 인하여 C가 채무초과상태에 이르렀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C가 무자력자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이 사건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 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순번	재산의 표시		가액(원)	근거
1	예금채권	K은행(계좌번호 1 생략)	267,292,180	다툼 없음
		K은행(계좌번호 2 생략)	320,000	
		Q은행(계좌번호 3 생략)	50,102	
2	종전 거주지에 관한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		80,000,000	

3	이 사건 점포에 관한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	30,000,000	
4	부산 수영구 S건물 T호 소유권	181,000,000	
5	U에 대한 대여금채권	13,000,000	을 23, 24
6	V에 대한 손해배상채권	10,350,800	을 8, 30
7	W에 대한 대여금채권	4,444,448	을 27, 28
합계		586,457,530	

5.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서희경